

『남북교류협력지원』

주 요 업 무 보 고

2005. 9. 13

經營企劃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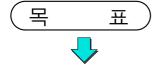
<u>보 고 순 서</u>

I.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과 전략 ······1
II. 최근 남북관계 동향 ·······2
Ⅲ.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5
【別添】
1.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9
2.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 14

I.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과 전략

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추구를 위해 단계별로 북한 핵문제 해결,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,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

1 목표 및 추진원칙



- ▷ 한반도 평화증진
- > 공동번영 추구
 -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
 - 동북아 공동번영 촉구

(추진원칙



- ▷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
 - ▷ 상호신뢰우선과 호혜주의
 - ▷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
 - ▷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

2 추진전략

○ 1단계 : 북한 핵문제 해결

▶ 북하의 핵불용

▶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

▶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

○ 2단계 :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-

남북협력 심화

평화증진 가속화

○ 3단계 :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── 남북평화협정 체결

3 당면 추진 방향

- 남북관계의 내실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등 「제2의 6.15 시대」를 개막. 대북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
- 평화번영 정책의 기조 아래 모처럼 찾아온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모색

Ⅱ. 최근 남북관계 동향

- ◆ 2004년 7월 이후 조문문제, 탈북자입국 문제, 북한의 6자회담 불참과 금년 2.10 핵보유 선언 발표 등으로 중단됐던 남북관계가 북측의 비료요청에 따른 대화재개 이후,
- ◆ 6.15 통일대축전, 8.15 민족대축전 등으로 이어지면서 북측의 6자회담 복귀에 이르고 있음
- □ 남북관계의 개선
 - 금년 1월부터 북측의 적십자사를 통한 계속적인 비료요청에 대하여 비료 지원 관련 남측의 남북 차관급회담 제안 북측 수용
 - 남북 차관급 회담('05. 5.16 ~ 19, 개성)
 - 「6.15 통일대축전』에 정부대표단 참가,
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6.21~24일 서울개최,
 인도적 차원의 비료 20만톤 지원 합의
- □ 남북 차관급회담 이후 6.15 통일대축전, 남북장관급회담,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연이어 추진됨
 - ① 6.15 통일 대축전('05. 6.13 ~ 6.17, 평양)
 - 방문단규모 : 남측민간대표 295명, 당국대표단 40명, 재외동포대표단 100명
 - 의미와 성과
 - ▶ 6.15선언의 정신 재확인
 - ▶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통한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발전의 좋은 환경 조성, 한반도 정세 불안감 해소

- ②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('05. 6.21 ~ 6.24)
 - 남북차관회의 후속으로 '05. 6.21 ~ 6.24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
 - 8.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 파견,
 이산가족 상봉 8.26부터 실시(제6차 적십자회담 8월중 개최),
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범개시,
 식량지원(40만톤) 등 합의
- ③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('05. 7. 9 ~ 7.12, 서울)
 - 경제협력 추진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12개항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함
 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의류·신발·비누 등의 원자재 북측제공, 북측은 지하자원 개발투자 보장, 개성공단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
 - 경의선·동해선 조속한 공사완료 및 10월중 열차시범 운행과 철도개통식 실시
 - 북측에 대한 쌀 50만톤 지원 등
- □ 본격적인 남북대화 전개 속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으로 남북관계는 급진전함
 - ① 북한의 6자회담 복귀
 - 북한은 7월 마지막주(25일이 시작되는 주) 북핵 해결을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미국과 합의
 -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침공의사가 없음을 북경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와 협의를 통해 확인하고 6자 회담들 안에서 양자회담 공식 확정

- 7.29부터 8. 7까지 제4차 6자회담이 북경에서 진행되었으나 성과물을 내지 못한 채 3주간 휴회하기로 하고 중단함
 - "미국이 정당한 평화적 핵 활동 권리를 보장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근본적 이유임" (김계관 북측대표, 조선일보 '05.8.8 보도)

② 사회문화교류 추진 활발

- 광복 60주년 기념을 위한 「8.15민족대축전」 개최(°05. 814~17, 사율)
 - 대표단 규모 : 북측민간대표단 100명, 남측민간대표단 400명, 해외측 민간대표단 150명
 - 이 기간동안 북한 대표단은 국립 현충현 참배(8.14),대통령을 예방(8.17)을 하였으며
 - 또한 남북통일축구경기[8.14(남), 16(여)]가 개최되었음
- 남북이산가족 첫 화상상봉 (8.15, 남북 각각 40가족)
 - 서울 대한적십자사 등 전국 11개 상봉장과 북측 평양 상봉장을 화상으로 연결
- 제 6차 남북적십자회담(8.23 ~ 8.25, 금강산)
 -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생사·주소 확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, 의견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함
 - 화상상봉, 서식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지속 실시와
 정례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한 만큼,
 추후 합의하여 추진할 계획임

Ⅲ.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

- ◆ 6.15 남북공동성명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는 중앙정부나 대북관련 단체차원에서 주도함
- ◆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남북의 화해 분위기 조성, 향후 통일에 기여하고자 함

↑ │ │ 추진배경 및 방향

- 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 - 한반도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갖가지 제약과 질곡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, 한반도의 통일은 냉혹한 국제사회의 생존경쟁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
 - 6·15 남북공동성명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통일이 기대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음
 - 따라서,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, 정부의
 통일정책 지원과 지방차원의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
 준비가 필요함

□ 추진방향

- 남북간의 대회를 통한 신뢰감 구축 및 상호이해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
-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질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사업 추진
- 문화·학술·체육 등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

2 주요 추진사항

- 1.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
- □ 제정취지
 - 6·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·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등 제정
- □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(2004. 7월 제정)
 - 문화·체육·학술·경제분야 등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
 -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등으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·유용
 -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,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·운영
 -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
-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2005, 1월 제정)
 - 기금 운용계획, 기금지원 대상 및 절차 및 지원금 교부
 - 기금 지원대상
 - ▷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·단체
 - ▷ 서울시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· 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 · 단체
 - ▷ 기타 서울시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·개인
 - 위원회 구성 및 운영

2.	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
	근 거 :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
	조성내역 : 200억원('04년 100억원, '05년 100억원)
	주요사업 내용
	○「서울과 평양 축구대회」개최 추진
	○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
	○ 학술·문화·체육·경제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체추진 및 지원
	○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
3.	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
	근 거 :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
	구 성: 14명(외부위원 11, 당연직 3)
	○ 위 원 장 : 박인주(서울흥사단 대표)
	○ 위 원 : 북한학자, 시의원, 공무원 등으로 구성
	○ 임 기: 2년
	기 능 :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
	○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·조정
	○ 남북교류협력의 촉진
	○ 기금의 운용 및 관리
	○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등

3 │ 향후 추진계획(추진가능 교류사업안)

- □ 「서울·평양 축구대회」부활추진
 -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1946년 8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「서울과 평양 축구대회」의 부활을 추진
 - 그간의 추진경과
 - 상암 월드컵경기장 기공식에서 서울시장이 공식제의('98.11. 6)
 -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서울·평양 축구대회 적정한 시기에 논의키로 합의('00. 9.27 ~ 30)
 -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축구경기(9.5 ~ 9.8, 서울)
 개최합의('02.8.12 ~ 14)
 - 남북통일축구 경기 개최('02. 9. 7. '05. 8.14 서울 상암경기장)
 - 서울·평양 축구대회 개최 지속적으로 협의 중
- □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
 -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·장기적 추진과제, 사업분야 추진방안 도출
 -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연구 추진
- □ 실현가능한 분야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
 - 학술·문화·체육·경제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, 프로그램 등 발굴
- □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등
 - 북측의 불의의 사고나 재난발생시 인도적 치원의 북측지원(예 : 용천사고)
 -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 등

별첨1

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

2004.7.20 조례 제4214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남북교류협력의 추진) ①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한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북한의 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공동으로 문화·체육·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(이하 "남북교류협력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- 제3조(기금의 조성) ①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 ②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수익금, 기타수입금으로 한다.
- 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.
 - 1.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
 - 2. 기금의 조성・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 - 3. 기타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
- 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·관리하되,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.
 - ②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1. 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
 - 2.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
 - 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6조(기금의 회계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.
 - 1. 기금운용관 : 경영기획실장
 - 2. 분임기금운용관 : 기획담당관
 - 3. 기금출납원 : 남북교류협력지원사무 담당사무관
- **제7조(보고 및 환수)** ①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 - ②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.
 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.
- 제8조(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)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·조정
 - 2. 남북교류협력의 촉진
 - 3. 기금의 운용 및 관리
 - 4.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
 - 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위원회 구성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1.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・단체에 근무하는 자
 - 2.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
 - 3. 시 관계공무원
 - 4. 시의회 의원
 -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수당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11조(재단의 설립) ①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서울남북교류협력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.
 - ②재단설립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
- 2.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
- 3.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
- 4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13조(재단의 기본재산)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
- 2. 사업 수익금
- 3. 기타 수입금
- 제14조(재단의 정관) ①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- 2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3.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
 - 4. 회계에 관한 사항
 - 5. 공고에 관한 사항
 - 6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7.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 -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5조(재단의 임원) ①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.
 - ②이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각계 인사, 시의회 의원,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,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, 대표이사는 이사회 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.

- ③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그 외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④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- 제16조(재단 임원의 직무) ①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통할한다.
 -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17조(재단의 이사회)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로 구성한다.
 -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.
 - 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 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⑤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8조(재단의 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 가 임면한다.
- 제19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**제20조(사업연도**)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21조(업무계획등) ①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

- 제22조(사업의 대행) 재단은 국가·시 또는 자치구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.
- 제23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 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- 제24조(재단의 지도·감독)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제25조(재정지원)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용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- 제26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

2005.1.15 규칙 제3421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금운용계획)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
 - 2.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
 - 3.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제3조(지원대상)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지워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
 - 2.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(지부·지회)를 두고 있는 법인·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
 - 3. 기타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지 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
- 제4조(지원절차) ①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1. 법인 또는 단체 :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
 - 가. 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서(이하 "사업계획서"라 한다)
 - 나.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
 - 다.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예금통장 사본
 - 2. 개인 :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
 - 가. 사업계획서
 - 나. 주민등록등본

- 다.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
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원금의 교부)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.
- 제6조(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) 조례 제7조제2항에서 "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지원된 기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지원된 기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
- **제7조(사업계획의 변경)**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정산 및 반납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장부의 비치 등)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기금관리대장(별지 제3호 서식)
 - 2. 현금출납부(별지 제4호 서식)
-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서 "시 관계 공무원"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의 경영기획실장·산업국장 및 문화국장을 말한다.
 -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1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

- 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3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남 북교류협력사무를 담당하는 담당관·과장이 된다.
- 제14조(운영세칙) 위원장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